##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45 제출연월일 : 2024. 7. 23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조(임원 등) ① ~ ⑤ (생	제5조(임원 등) ① ~ ⑤ (현행과			
략)	같음)			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6			
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				
원이 될 수 없다.				
<u>1. 미성년자</u>	1. 18세 미만인 사람	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	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			